한국제지연합회 공고 제2021-2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4호 : 2019.12.31)에 의거 당연합회의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1. 1. 18

한국제지연합회장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세부요령

제 1 부 협정관세추천

제1조(목적) 이 요령의 목적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세부요령 의거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대상품목(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이하 '협정관세추천'이라 한다) 및 한국제지연합회(이하 '제지연합회'라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협정관세추천 받은 실수요자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대상품목)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H·S	품 명	용도
매니옥전분	1108.14.9000	매니옥전분(기타)	제지용·골판지용

제3조(추천 및 사후관리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협정관세적용 추천 및 사

후관리대상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장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니옥전분을 사용하여 제지 또는 골판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한다.

제4조(추천물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별 협정관세 추천물량 범위내로 한다.

제5조(협정관세추천 신청서류)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신청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입관리요령에서 명시하고 있는「기타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2. 수요 및 제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 원료사용 및 제품생산 계획서 1부
   (나) 물품매도 확약서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1부(대행계약자에 한함)

제6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 부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사항) 제지연합회는 협정관세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후관리한다.

1. 협정관세추천 품목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협정관세추천 물량에 대한 사용량·재고량 등의 보고일치 여부에 관한 사항.
3. 수불관리대장비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사후관리방법) 제7조에 의한 협정관세추천 품목의 사후관리는 서면보고를 기본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제지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지연합회장은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보고) 제지연합회는 제8조에 의하여 현장 확인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기록정리) 협정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원자재의 수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불발생시마다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신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실수요자는 그 사실을 제지연합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보고) 협정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지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
2. 원료사용실적, 원료재고량 및 제품생산량 등

제13조(제재 및 보고) ① 당연합회장은 제8조 내지 제12조에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에 대해 별표 2의 제재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② 당연합회장은 전항에 의한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본 요령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및 지

시에 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및 지시에 의거 본 요령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기존 동 공고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4호에 의거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별표2】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위 반 내 용	관련 조항	위 반 회 수 별 제 재 기 준		
		1 회	2 회	3회
1.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외 사용한 경우	제7조	1년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	2년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	협정관세 추천 대상 제외
2. 사후관리 보고서를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제12조	서면경고	6개월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	1년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
3.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10조	서면경고	6개월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	1년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
4. 현장점검시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한 경우	제 8조	서면경고	6개월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	1년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
5. 협정관세 추천대상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서면경고	6개월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	1년간 협정관세 추천 정지